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안내

- 1.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출 지원과 관련됩니다.
- 2. 최근 일부 국가에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, 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제조·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특성상 신청 구비서류* 중 품목제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- * 영업허가 · 신고 또는 등록증, 품목제조보고서, 수출신고필증
- 3.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처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서 대신에 아래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가 발급 가 능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 - 국내에서 유통·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라 "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"의 목록 등에 해당되고, 해당 농수산물이「식품위생법」,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영업자에게 판매·거래된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(생산자→영업자, 영업자→영업자 포함)
- 4. 관할 지방청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운영지원과장), 부산지<mark>방식품위약품약전청</mark>장(운영지원과장),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운영지원과장)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문영지원과장),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운영지원과장), (씨)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

협조자

시행 수입식품정책과-5821 (2022. 10. 2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현지실사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158 팩스번호 043-719-2150 / eyjung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